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회의소법안 검 토 보 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85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6
1. 법 제정 필요성	6
2. 목적 및 정의	9
3.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10
4. 정치적 중립	10
5. 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범위	11
6.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요건	13
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	14
나.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	15
다.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	17

7. 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자격	17
8. 대의원총회	18
9.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비 지원	20
10.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21
11. 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 취소	22
12.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도·감독	23
13. 시행일 및 경과조치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8.
3. 회 부 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선거 및 임기(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

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마.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 2)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전체 시·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 2)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안 제43조)

1)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1인의 부회장으로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함.

2)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아.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차.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하도록 함.

카. 경비 지원(안 제6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IV. 검토의견

1. 법 제정 필요성

우리 농어업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FTA, TPP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하향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농어업회의소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2023년 12월 현재 기초 단위에 26개, 광역 단위에 1개 등 총 27개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농어업회의소 설립 현황 (2023.12월 기준)】

구 분	선정일	설립일 (창립총회)	개인회원수 /농어업인수 ¹⁾ (비율%)	단체 회원수	특별 회원수	개인회비 (천원/년)	상근 직원	법인인가 /등기	사업자 등록	조례제정
강원 평창	*10.12.	*12.3.14.	992 / 3,722 (26.7)	26	9	30	8명	*12.5.9. /5.21.	*12.5.25.	*12.7.6.
전북 진안	*10.12.	*11.9.20.	660 / 3,457 (18.8)	15	8	30	1명	*11.10.27. /10.27.	*12.5.11.	*12.6.15.
전북 고창	*11.9.	*12.11.5.	397 / 7,947 (5.0)	8	-	36	1명	*13.1.29. /1.31.	*13.2.4.	*12.5.25.
전남 나주	*10.12.	*12.2.8.	1,399 / 10,708 (13.1)	50	16	36	2명	*12.3.29. /4.9.	*12.4.13.	*11.8.1.
경북 봉화	*11.9.	*12.7.18.	1,037 / 5,667 (18.3)	24	-	60	1명	*12.7.31. /8.6.	*12.8.7.	*12.6.28.
경남 거창	*11.9.	*12.4.30.	746 / 5,785 (12.9)	20	9	60	3명	*12.6.4. /6.8.	*12.6.11.	*12.3.26.

구 분	선정일	설립일 (창립총회)	개인회원수 /농어업인수 ¹⁾ (비율%)	단체 회원수	특별 회원수	개인회비 (천원/년)	상근 직원	법인인가 /등기	사업자 등록	조례제정
경남 남해	'12.9.	'13.6.27.	545/6,937 (7.9)	15	7	36	1명	'13.8.13. /8.28.	'13.8.29.	'13.10.28.
충남 예산	'15.10.	'16.11.11.	1,136/8,486 (13.9)	22	11	24	2명	'16.12.20. /12.21.	'17.1.4.	'16.12.23.
충남 당진	'16.7.	'17.11.21.	802/10,695 (7.5)	6	16	24	3명	'17.12.20. /12.27.	'18.1	'20.6.26
강원 정선	자체추진	'17.12.20	723/2,136 (33.8)	9	8	60	3명	'18.3.5. /3.12	'18.3.16	'18.11.12
충남 아산	'16.7.	'18.2.20.	453/8,556 (5.3)	2	1	36	1명	'18.7.5. /9.13	'18.10.29	'21.12.15
전북 완주	'15.10.	'18.3.24.	423/7,392 (5.7)	16	-	30	1명	'18.7.27. /8.14	'18.10.8	'17.8.3
충청 남도	'15.10.	'18.12.4.	7개 시군	33	1	5%	2명	'19.3.5 /3.20	'19.3.27	'19.2.20.
충남 금산	'17.8.	'18.12.13.	160/6,235 (2.6)	2	-	30	1명	'20.1.7 /1.30	'20.2.17	'21.12.30
전북 익산	'17.8.	'19.3.27	935/10,674 (8.8)	17	1	60	1명	'19.4.17 /4.30	'19.5.9	'18.11.23
충남 부여	'18.9.	'20.4.29	1,124/15,025 (15.8)	20	9	60	7명	'20.5.12 /5.20	'20.5.22	'19.9.26
전남 담양	'16.7.	'20.6.30	780/6,621 (11.8)	50	11	50	3명	'19.7.22 /8.7	'19.8.8	'19.2.1
강원 횡성	자체추진	'20.6.11	1,105/5,582 (19.8)	-	-	20	2명	'20.10.26	'20.6.29.	준비 중
강원 춘천	'18.9.	21.4.2	929/6,243 (14.9)	21	10	30	1명	21.5.25 /6.2	21.6.11	'20.11.5
경북 경주	'18.9.	21.4.2	3,024/12,592 (24.0)	20	14	30	2명	21.5.13 /6.7	21.6.9	준비 중
경북 영덕	'17.9	'21.3.18	658/3,067 (21.5)	18	8	36	1명	21.6.29 /7.12	21.7.14	'19.12.11
경기 화성	'16.7	'21.3.15	1,372/9,891 (13.9)	7	16	36	1명	'21.11.1 /11.9	21.11.19	'18.8.13
충남 논산	자체추진	'21.11.11	588/9,599 (6.1)	26	3	60	2명	'21.12.30 /22.1.6	'22.1.16	준비 중
충남 홍성	'19.9	'21.11.15	890/9,365 (9.5)	17	2	50	1명	21.12.30 /22.1.6	22.1.14	'21.9.30
경북 고령	'19.9	'21.12.10	370/3,910 (9.5)	17	1	24	1명	'22.2.25 /3.4	'22.3.30	'20.7.10
강원 양구	'20.7	'22.3.31	187/1,872 (10.0)	13	4	60	2명	'22.5.30 /6.16	'22.6.27	'22.3.3
전북 김제	'19.9	'23.5.2	310/7,608 (4.1)	20	2	30	1명	준비중	준비중	'21.11.1

* 주1) 농어업인 수는 2020년 기준

제정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및 농림어업인단체 등이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의 파트너로서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향후 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이와 같은 제정안의 취지와 함께 기존 농민단체 등과의 차별화, 경비지원에 따른 관변단체화 우려, 농업 관련 기관과의 기능중복 및 수행역량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회의소 법안」 [(신정훈의원(제2100432호)·홍문표의원(제2105687호)·위성곤의원(제2106753호)·이개호의원(제2107709호) 대표발의 및 정부제출(제2112343호)] 과 「농림어업회의소법안」 [위성곤의원(제2112904호)·안호영의원(제2124181호) 대표발의] 을 병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안」 (제2126699호, 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의결(2024. 5. 28.)되어 정부에 이송(2024. 5. 28.)되었으나, 헌법 제53조¹⁾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2024. 5. 29.)되었고,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2024. 5. 29.)된 바 있음.

이하에서는 제정안 입법 시 검토되어야 할 제정안의 구체적인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봄.

1)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면서, 농림어업인·농어업회의소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은 제명 및 회의소의 명칭을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에 있는 “농어업회의소”로 하면서도, 목적 및 정의규정에서의 용어는 ‘농어업인’이 아닌 ‘농림어업인’으로, ‘농어업·농어촌’이 아닌 ‘농림어업·농산어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임업’과 ‘임업인’, ‘산촌’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률에 ‘임업’과 ‘임업인’, ‘산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²⁾ 체계상 ‘농업’은 ‘임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농업인’에는 ‘임업인’이 포함되고, ‘농촌’에는 ‘산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3.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를 ① 국가 및 지자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과정 참여 ② 자문·건의 ③ 조사·연구 ④ 정보·자료 수집·제공 ⑤ 교육·훈련·홍보 ⑥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⑦ 국가와 지자체 위탁사업 ⑧ 부대사업 이상 8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가 농림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변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그 사업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시된 8개 사업의 경우 사실상 기존 농림어업인 단체와 소속·유관 전문기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 문제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4. 정치적 중립(안 제7조)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공직선거에서 ①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②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③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비지원(안 제62조) 등에 따른 관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상공회의소법」 역시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³⁾을 두고 있음.

5. 농어업회의소 관할 범위(안 제8조, 제35조 및 제49조)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광역·전국농어업회의소의 3개의 계층적 구조로 설립하도록 하면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특별시와 특별자치시,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행정시, 도(道) 내의 시·군을 관할로 설립하도록 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경우, 2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이 가능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도를 관할로 설립하도록 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전국단위로 1개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상공회의소법」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농어업회의소 관할 범위】

구 분	관 할 구 역
기초 농어업회의소	- 도(道) 내 시·군 - 특별시 - 광역시(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함)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광역 농어업회의소	- 도(道) - 광역시(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로 한정) - 특별자치도
전국 농어업회의소	- 전국단위로 1개의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관외 경작자가 많고 농업인 수가 적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를 통합하여 1개의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광역시의 군(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달성군,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울산시 울주군)은 개별적으로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해당 광역시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모여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에서 일반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과 해당 지역의 농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6.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요건(안 제9조, 제36조 및 제50조)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발기, 동의, 인가에 관한 사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안정적 설립·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농어업회의소 설립 요건】

구 분	발 기	동 의	인 가
기초 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 30명 이상 의 발기	농림어업인의 10% 또는 1,000명 이상 동의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해수부장관과 협의
광역 농어업회의소	(기준) 관할구역 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수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해수부장관과 협의
도	전체 사군 중 1/5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전체 사·군 중 1/3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	
광역시 (군자치구 모두 포함)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2개 이상의 기초농어업 회의소의 동의	
특별자치도			
전국 농어업회의소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의 기초·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3분의 1 이상 기초·광역농어업 회의소의 동의	

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

제정안은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경우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0%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농어업회의소 설립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그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여 농림어업인들이 쉽게 회의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그 입지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농림어업인과 농어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을 감안하여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가능성과 대표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립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한 성격의 단체 설립 요건을 참조하면, 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 이상의 서명⁴⁾을 필요로 하고, 지역농협의 경우 20인 이상의 발기⁵⁾로 1,000명 이상의 동의⁶⁾를 받아

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 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권한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이 별도의 어업회의소를 두지 않고, 농업과 어업을 통합하여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 대하여 농업·어업 회의소의 통합 설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나.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

제정안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을 ‘관할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도(道)의 경우 관할구역 전체 시·군 중 1/5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1/3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2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는 ‘관할구역 내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수’에 따라 설립 요건을 달리하게 되면 만약 한 개의 광역자치단체 내에 2개의 기초농어업회의소만 설립되어 있는 경우 1개의 기초농어업회의소만으로 광역조직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설립 요건을 ‘관할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단체 간 이견조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인가와 마찬가지로 제정안이 농업과 어업을 통합하여 설립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 대하여, 농업·어업 회의소의 통합 설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다.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

제정안은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요건으로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의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3분의 1 이상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광역농어업회의소 규정과 마찬가지로 설립요건을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에 연계하여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 대하여 농업·어업 회의소의 통합 설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7. 농어업회의소 회원 자격(안 제13조, 제38조 및 제52조)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회원자격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업 회의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농어업회의소 회원 자격】

구 분	자 격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초 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
광역 농어업회의소	기초농어업회의소/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음.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
전국 농어업회의소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

8. 대의원총회(안 제20조, 제42조 및 제55조)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별 정원의 상한,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특별대의원의 비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회의소 대의원총회】

구 분	정원상한	구성		특별대의원 비율
		일반대의원	특별대의원	
기초 농어업회의소	100명 이내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	1/3 이내
광역 농어업회의소	-	(광역시, 특별자치도) : 기초농어업회의소 회장·1인의 부회장		
		(도) : 기초농어업회의소 회장		
전국 농어업회의소	-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회장		

특히, 제정안은 읍·면·동별 회원 수를 고려하여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을 정하되, 읍·면·동별로 대의원의 정원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여성인 대의원이 일반대의원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원칙적으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되, 지역 대표성과 성별 대표성을 함께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9.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62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광역·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의 자치조직이라는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농어업회의소가 회비로만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설립·운영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 대하여, 관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농어업회의소 설치·운영 경비는 원칙적으로 회비 등을 통해 자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한편,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으나,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를 지원⁷⁾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상공회의소법」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63조)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될 경우,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개선 조치 요구일로부터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며,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대의원 재적정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한 자 2/3 이상 찬성으로 재신임 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구 분	내 용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상행위	-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조치요구	- 농어업회의소에 시정명령 및 - 해당 임원 개선조치 요구
직무정지	- 개선조치 요구일로부터 임원 직무정지
관련절차	- 15일 이내 대의원총회 소집, - 대의원 재적정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한 자 2/3 이상 찬성으로 재신임 의결 - 해당 임원에게 진술기회 제공

11. 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 취소(안 제64조 및 제65조)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아래 7가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장관을 설립인가 취소권자로 지정하되, 설립인가 취소시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설립인가 취소사유】

구분	취소사유
설립인가 취소사유	①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② 설립인가기준 미충족
	③ 목적 달성 불가능
	④ 목적 외 사업추진
	⑤ 법 또는 정관 위반
	⑥ 6개월 이내 사업 미실행 또는 1년 이상 사업실적 없을 경우
	⑦ 공익을 해치는 경우
	→ 회의소 설립인가 취소 시 청문 실시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 대하여 법 제정 필요시 농업·어업 회의소의 통합 설치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 권한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2.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66조)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회의소에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어업회의소를 인가한다는 점,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상공회의소법」은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 대하여 농업·어업 회의소의 통합 설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규정 역시 함께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 「상공회의소법」 제50조(지도·감독)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3.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제정안은 법률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면서, 법률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있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제정안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새로 설립되는 농어업회의소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할구역 내 하나의 농어업회의소만 설립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협동조합 기본법」 9)에서도 기존 사업자 및 법인이 해당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설립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바 있음.

다만, 경과조치를 인정해주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존의 농어업회의소가 제정안에 따른 농어업회의소로 전환되는 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한 내에 설립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협동조합 기본법」 부 칙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417
